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진성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58

발의연월일: 2024. 6. 19.

발 의 자:진성준ㆍ허 영ㆍ위성곤

유동수 · 김현정 · 송재봉

조 국・강선우・정준호

주철현 • 이학영 • 강훈식

박희승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임대료 지원 규정을 두어 국가가 입주자에게 부과된 일정 한 임대료 중 일부를 사업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,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가 연 평균 6% 상승하면서 관리비를 체납하는 영구임대주택 가구가 매년 1만 5,000호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, 현행임대료 지원만으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문제를 경감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용 목적으로 사용한 관리비 및 사용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공 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2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 제목 중 "임대료"를 "임대료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국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용 목적으로 사용한 관리비 및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	행		개 정 안
제5조(임대료에	대한	국가지원)	제5조(<u>임대료 등</u> 에 대한 국가지
(생 략)			원) <u>①</u>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
			같음)
<u><신 설></u>			② 국가는 장기공공임대주택
			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
			위하여 공용 목적으로 사용한
			관리비 및 사용료를 대통령령
			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
			<u>수 있다.</u>